

2021 제2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영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프랑스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외국법제동향

- 일본 바이오뱅크 및 인체 시료·정보 관련 법제 동향
-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 미국 「무역확장법」과 수입규제 법제 동향
- 미국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과 국방획득전문가 양성제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1 제2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미국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과 국방획득전문가 양성제도

최기일 |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방위사업학박사

I. 들어가며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은 1990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다. 당시 미 국방성은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 관련 사업담당자들이 특정 직책에 장기간 보직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국방획득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충분한 전문성과 지식을 구비하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를 착수한 결과로 마련된 배경이 있다.

올해 1월 1일부로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교육원’이 개원했다. 2006년 1월 1일 자로 「정부조직법」¹상의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된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 근절과 척결을 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예하 국방조달본부부를 개칭하여 설립한 중앙정부기관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²에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 방위사업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정책 추진 등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은 제고했지만, 정작 전문성에 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로 10년간 방위사업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 추진과 전문교육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舊 국방획득교육원) 설립 등을 줄곧 노력해오다 2021년 1월 1일부로 방위사업교육원이 신설될 수 있었던 것에 있어 나름의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금번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의미와 함께 이른바 ‘한국형 DAWIA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 검토를 위한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의의와 시사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1 「정부조직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서 수행되어 오던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체계를 통합함으로써 국방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으로 2006년 1월부터 개칭, 신설됨.

2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으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이 명기되어 있으며, 투명성과 함께 전문성이 중요한 기본이념으로 제시된 배경이 있음. 이는 방산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전문성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통해 비리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사전적 예방하고자 한 측면임.

II.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고찰

국방획득 관련 교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1970년대 초부터 국내 방위산업에 있어서 국방획득 교육이 추진되어 시작됐으나, 최근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2015년부터 이른바 ‘사자방’³으로 불린 방산비리의 여파로 관련 비리 쟁점사항들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다.

먼저, ‘국방획득(Defense Acquisition)’이란 학술적 의미로는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 시험, 계약, 생산, 배치, 군수지원, 개량, 폐기처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⁴ 국내 국방획득 제도 및 업무절차는 주로 미국에서 유래되었으며, 미국에서의 국방획득은 “군사적 임무를 지원 및 사용할 예정인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건축물 포함), 군수품, 무기와 그 이외 체계들을 개념화·착수·설계·개발·시험·계약·제작·배치·군수지원·개량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획득은 소요, 예산, 획득프로세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획득은 구매의 방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획득프로세스에 소요와 예산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⁵

종합적으로 국방획득의 개념은 위의 내용들과 방위사업청이 발간한 용어사전⁶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의하자면, ‘국방획득’이란 무기 및 장비 등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라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획득 교육’을 정의하면, “무기 및 장비 등 군수품의 획득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의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는 행위”라 정의할 수 있겠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급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국가 가용 자원의 한계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군사력 건설 차원의 국방획득의 비중은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방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방획득 교육이야말로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측면이 높겠으며,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을 중심으로 관련 국방획득 교육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주요할 것이다.

3 사자방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 발생했던 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치권 및 언론에서 주로 사용되어 통용된 용어임.

4 김종하, 『획득 전략 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p.17, 김종열, “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62호, pp.123-156.

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2008.

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용어사전』, 2013.

III.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 주요 내용과 특징

1. 입법 배경과 추진경과

미국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자국의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에 극심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홍역을 겪은 바 있다. 이른바, 미 국방성은 국방 분야에서 연이은 스캔들(Scandal)이 발생되자, 당시 미국의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다.

1985년에 미 국방부는 국방획득 관련 교육 및 훈련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요구했다. 동시에 종합적인 국방획득 교육 관련 추진 관리를 검토하기 위해서 'Packard 위원회'가 설립된다. 이후 미 국방성 주관 하에 'DSMC(Defense System Management College)'를 설치, 국방획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다시 세월이 흘러 국방획득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가 다시 본격화 추진 및 시행되어 1990년 11월 5일에서야 발효된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이 제정될 수 있었다. 이때, 1991년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이 제정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방 및 방위사업에서의 비리를 근절, 사전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었으며, 국방획득대학(DAU)⁷을 설립하면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에 따라 미 국방성 산하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 관련 종사자들은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화했고, 해당 의무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관련 업무에 보직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 국방성은 국방획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 주도하에 법·제도적 측면에 있어 관련 다양한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왔고, 의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인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이 제·개정되면서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분야가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되어 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7 1990년 11월, 미국의 「국방획득전문자격법(DAWIA)」 제정이 근거가 되어 실질적인 국방획득 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 국방획득대학(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을 설립한 배경이 있음.

2. 법령상 구성과 효력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은 1990년 11월 5일, 「공공법」 101-510에 의해서 처음 제정되었다. 국방부가 민간 및 군사 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표준, 요건 및 과정을 수립할 것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 'USC 타이틀 10' 제87장이 수정됨에 따라 개정된 바 있다.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 시행 초기에는 국방획득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보직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제반여건과 환경과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 훈련, 경험 요구조건들을 해당 직위별 업무에 요구되는 수준에 기초를 바탕으로 획득전문 직위별로 해당 기준을 설정하여 수준별 및 맞춤형 전문 실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했다.

미 국방부의 'DoD Directive 5000'을 통해 모든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따라야 할 통합 접근 방식을 제시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방획득대학(DAU)이 설립되었고, 이전에는 별도 서비스 이외에 별도과정으로 구성되어 통합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에서 공식적인 전문교육기관이 발족할 수 있었다.

미 국방획득 업무 종사자들의 해당 교육과정 구조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5개 대학 수준의 캠퍼스로 이어지게 되고, 국방획득대학(DAU)을 중심으로 DAG(Defense Acquisition Guide), Defense AT&L Magazine, Defense Acquisition Review Journal 등의 도서출판, 학술지 발간, 온라인학습 등을 포함한 수많은 특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전문교재 등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였다.

표1 미국의 국방획득 전문인력 수준별, 단계별 교육대상⁸

수준	교육대상	학력	실무경력
초급(Level I)	현역 : 위관 일반직 : GS04 - 08	학사 이상	1년 이상
중급(Level II)	현역 : 중·소령 일반직 : GS09 - 12	석사 이상 요망	2년 경력 필수, 2년 추가 요망
고급(Level III)	현역 : 중령 이상 일반직 : GS/GS13 이상	석사 이상	

국방획득 분야 관련 인력의 민간 및 군사 직급은 15개의 기능영역에 속하는 취득 의무를 갖게 되는데, 각 영역에 대해서 인증은 Level I 기본 또는 초급(GS5-9), Level II 중급 또는 중간(GS9-12),

8 미국 국방획득대학(DAU), 2002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Catalog 『Certification Standards Checklists』, pp.81-96.

Level III 고급 또는 전문가(GS13 이상) 단계의 세 가지 Level로 구분이 된다. 이외에 감사, 구매, 계약, 설비공학, 산업 및 재산관리, 정보 기술, 총 수명주기 물류, 생산, 품질 및 제조, 프로그램 관리, 중소기업, 시스템 계획,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시험평가 등 국방획득 분야의 세부 분야별로 구성하여 명시하고 있다.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을 통해 미국은 군사적 지식, 기초이론 및 실무적 지식을 갖춘 국방인력의 육성을 통해 국방 분야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을 운영 중이며, 국방획득대학(DAU)에서는 군사적 지식이나 기초이론 교육만이 아닌 획득분야에서 실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양성과 자격 획득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적용 범위와 특징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은 미 의회 제101차(1989 ~ 1990) 회기에서 제정되었으며, 국방부 내에서 적용될 국방획득 및 조달 인력과 관련된 연방군 조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방획득 분야 근무자에 대한 연수, 교육, 경력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시행, 감독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 측면에서 국방차관이 통제하고,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 국방부의 국방획득 관련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획득업무 경력분야(16개)와 경력의 수준(Career Level)을 분류하여 교육체계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국방부 내 국방획득 업무의 통일화와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전문직위에 보직될 여러 기준을 설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획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국방획득 관리의 효율화를 기여하고 있다.⁹

미국은 국방획득 전문인력에 대한 경력관리를 위해서 특정 전문분야로 분류된 요원들의 보직은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 수직, 수평적으로만 보직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직위를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직 시에 축적해야 하는 경험이나 요구되는 학위와 훈련사항을 제시한다. 국방획득 분야와 경력 수준(Career Level)에 따른 보직과 이에 수반되는 교육, 훈련 요구사항들은 경력 경로(Career Path)를 제도화함으로써 획득직위에 근무하는 인원은 차후 보직 가능직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키고 경력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국방획득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한 직책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인식으로 국방획득 추진사업에 있어서 전문인력들에게 충분한 전문성과 지식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9 미 국방부(DoD) 훈령 5000.57 참조하여 일부 발췌, 인용하였음.

특히, 구매 및 계약 관련하여 \$25,000(소액 구매계약 한도) 이상의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계약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직자격 취득 직위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 경험 및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이외에도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GS-1102 분야는 국방부에 고용되기 전에 요구되는 경험과 교육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취득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군 경력관리위원회가 입증된 직무성과와 자격 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해당 담당자가 더 큰 책임과 권한으로 승진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경력 및 교육 요건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획득 분야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획득 관리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체계가 조직적이며, 해당 교수진의 구성과 내용도 전문화 되어 있다. 각종 지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특정 직위에 보직되기 전에 3~6개월간 선정된 필수과목들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직위에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무적용 기술을 충분히 갖추어 업무에 임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획득 관리 분야 종사자들은 완전히 전문화되어 장기간 보직을 담당하며, 해당 직위에서 진급 및 보직 전환 시마다 그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육과 실무가 철저히 연계된다.

또한, 장기보직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민간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시켜 현역과 핵심보직을 놓고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에서 필요직위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거나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선발된 직위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미 정부는 한 직위에서 평생을 근무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이고, 미 국방부 내에서는 이들의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지속 및 연속성(Continuity)¹⁰이라 표현한다.

국방획득 분야 종사자의 현역군인과 공무원의 비율은 약 2:8 인 것에 비해 관리직급의 비율은 8:2 정도로 현역군인 비율이 높으나 점차 그 비율은 7: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보직 변경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군인들이 보직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되었고, 한편으로는 장기근속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업무경험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지휘보직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0 류화·김형철, "미 국방 획득대학 DAU의 전문인력양성제도 소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5. 5, pp.96-103.

표2 미국의 국방획득 보직자격 제도 현황

직위		경험	교육	학위	비고	
계약수행직위		2년	관련 계약관리과정 24학점 (인정분야만 가능) ¹¹	학사 이상	GS-1102 또는 상응하는 현역직위는 경험과 관련 과정만 이수 (앞의 자격조건은 간소화된 획득기준 ¹² 이상의 계약관리 사무업무 수행 시 요구됨)	
획득단		4년 (국방성, 민간, 정부)	24학점 (인정분야)	학사 이상 (또는 재능 보유)	주요 획득직위는 획득단 내에서만 임명이 가능	
주요획득 직위 (6개월 유예기간)	주요 획득사업관리자	8년 (체계사업부서나 유사조직에서 2년 포함)	상동	상동	사업관리과정의 이수 (국방체계대학 또는 민간의 교육기관)	
	상당하지만 주요 획득사업이 아닌 사업의 관리자	6년	상동	상동		
	주요 획득사업의 부 관리자	6년 (체계사업부서나 유사조직 2년 포함)	상동	상동		
	상당하지만 주요 획득사업이 아닌 사업의 부 관리자	4년	상동	상동		
	사업집행관	10년 (4년 이상 주요 획득직위, 사업관리자나 부 관리자 경험)	상동	상동		
	고위 계약관리공무원	주요 획득직위에서 4년 이상 계약관리	상동	상동		-
	장성급, 장교, 일반직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	10년 (4년 이상 주요 획득직위)	-	-		-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과 국방부(DoD) 훈령 5000.57에 의거하여 국방부 예하에 국방획득 훈련과정을 교육하는 국방획득대학(DAU)을 설치했는데, 기관명에 대학(Universit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종합대학이 아닌 국방획득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11 회계, 사업, 금융, 법, 계약, 구매, 경제, 산업관리, 마케팅, 정량적 방법, 조직관리 분야의 수업 이수 등임.

12 title 10, sec 2304. 상업물품 구매 시 \$5million 이하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절차임.

표3 미국의 국방획득대학(DAU) 관련 군 협력 교육기관¹³

소속	교육기관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체계관리대학(DSMS: Defense System Management College) • 국방산업대학(ICAF: Industrial Collage of the Armed Forces) • 국방자원관리대학(IRMC: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Collage) • 국방계약관리학교(DCAI: Defense Contract Audit Institute) • 국방 훈련, 교육, 개발 군수센터(DCTED: Defense Logistics Agency Center for Train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육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군수관리대학(ALMC: Army Logistics Management College)
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대학원(NPC: Naval Postgraduate School) • 해군시설계약훈련센터(NFCTC: Naval Facilities Contracts Training Center) • 해군전쟁평가부(NWAD: Naval Warfare Assessment Division) • 해군획득훈련센터(NCAT: Naval Center for Acquisition Training) • 연구개발 및 획득차관실(OASN, RD & A: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of Navy, Research, Development & Acquisition)
공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군공과대학(AFIT: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 • 공군 계약/획득 훈련센터(AFCATC: Air Force Contracting/Acquisition Training Center)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인 국방획득대학(DAU)의 목적은 국방획득 관련 업무체계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16개의 분야별 국방획득 경력분야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수준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국방획득 교육 협력기관의 각종 교육행정 및 학사지침과 의무교육과정 등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¹⁴

4. 주요 법령 내용과 합의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은 국방획득 관련 분야의 경력 수준에 따른 보직과 이에 수반되는 교육 및 훈련 요구사항들을 경력 경로화하여 제도화함으로써 국방획득 직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당 주요 법령 내용 중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에 대해 명시한 관련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국방획득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13 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Fiscal year 2000 Course Catalog Appendix B 『Consortium Members and Points of Contact』.

14 국방획득대학(DAU)의 군 협력학교 의무교육과정은 각 전문분야별로 단수 또는 복수의 교육과정으로 구성, 편성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은 국방획득 관련 전문 13개 분야로 초급(Level I), 중급(Level II), 고급(Level III) 과정을 나누어 있음. 각 과정별 교육기간은 사업관리 고급과정을 제외한 대부분 20일 이내의 단기과정으로 모든 과정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교육하는 체제로 운영 중임. 해당분야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준별 교육대상 자격을 계급, 학위 수준, 실무경력 수준에 따라 제한하여 실시함.

IV.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과 훈련

- Policies and programs(sec 1741): 정책 및 사업의 수립 적용
 - (a) 국방장관은 이 조항에 의거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 (b) 자금(예산)수준: 획득차관은 매년별로 국방장관에게 국방비 중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의 수준을 권고한다. 국방장관은 title 31의 sec 1105¹⁵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예산작성을 위해 국방예산 타당성평가서에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수준을 수립해야 한다.
 - (c) 사업: 각 군의 총장은 획득집행관을 통해 이 항에 의거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자격조건을 수행함에 있어 각 군의 총장은 해당 군 전체에 수립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타군과도 가능하면 통일적으로 수립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Internship, cooperative education, and scholarship programs(sec 1742): 시보, 협력 교육, 장학제도 프로그램
 - (a) 프로그램: 국방장관은 아래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1) 국방장관은 자격과 재능을 갖춘 인력들이 획득업무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진 및 경력 확대, 전문화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2) 국방장관은 하나 또는 그 이상 공인된 고등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교육학적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는 국방부 획득직위에서 근무하는 교육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 (3) 국방장관은 획득인력들이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장학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b) 장학금의 조건: (a)(3)항에 의거한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 방법과 조건을 담은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sec 2005¹⁶에 따라 고급교육 지원조건에 상응하게 수혜자가 약속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변상 방법과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vailable to acquisition personnel(sec 1745): 획득인력에게 가능한 추가적 교육과 사업관리 훈련
 - (a) 수업비 변상과 훈련
 - (1) 국방장관은 국방부 획득인력에게 수업료 변상과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정규과정을 포함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일반직의 경우, title 5의 sec 4107(b)항¹⁷에 의해 수업료 변상과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sec 4107(b)항¹⁸에 의거하여 국방부에서 자격 취득 후 획득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된다.
 - (3) 현역의 경우, sec 2007¹⁹에 의거한 제한에서 이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학자금의 변상: 국방장관은 title 5의 sec 5379²⁰에 의거해서 획득분야에 임명된 보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학자금을 변상할 수 있다.

-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structures(sec 1746): 국방획득대학의 구조
 - (a) 국방획득대학의 구조: 국방장관은 획득차관을 통해 국방획득대학을 설립 및 유지하며, 이는 아래와 같다.
 - (1) 전문적 교육개발과 획득인력의 훈련
 - (2) 학문적 관점에서 본 획득정책 분야의 현안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 (b) 민간 교직원
 - (1) 국방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많은 민간 전문가 또는 강사를 국방획득대학에 고용할 수 있다.
 - (2) 이 항에 의거하여 고용된 인원들에 대한 보상은 국방장관이 공표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3) 이 항에서 말하는 국방획득대학에는 국방체계관리대학을 포함한다.

- Acquisition fellowship program(sec 1747): 국방획득 분야 연구원 양성프로그램
 - (a) 수립: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국방획득 분야에서 높은 능력을 갖춘 인력들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연구원 양성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 (b) 연구원 양성프로그램 직원의 수: 국방장관은 최대 25명까지 연구원 양성프로그램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c) 적격성(자격): 연구원 양성프로그램 직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지원자격
 - (1) 적어도 2년 내 국방부에서 국방획득 직위로 정부 행정업무 수행 경험을 쌓아야 한다.
 - (2) 공무원을 떠난 후 법에 따라 구직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의무를 가지는 국방부 내 국방획득 관련 직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 (d) 2년간의 연구와 교육: 국방장관은 프로그램 직원들이 국방획득대학, 중앙정부, 기타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비영리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직원들의 보수는 직원들이 이전에 국방성에서 근무 시 수행하던 직위에 지불 가능한 비율로 결정된다.

미 국방부는 국방획득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한 직책에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시행해왔다. 구체적인 세부 국방획득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전문인력들에게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그리고 경

15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회에 대한 제출을 규정하는 조항임.

16 고급교육의 지원조건과 조건동의, 변상조건을 규정한 조항임.

17 효과적인 교육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위, 온라인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할 수 있음.

18 (1) (B)항에서 인력균형을 위해 고려할 수 있음.

19 교육과 훈련을 마친 이후에 특정기간 동안 임무수행을 약속하는 제한규정임.

20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험 요구조건들을 해당 직위별 업무에 요구되는 수준에 기초를 두어 획득전문 직위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방획득 분야 교육 및 훈련에 있어 수준별 맞춤형 경력관리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IV. 관련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1990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은 국방획득 분야의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정통한 업무 전문성과 복잡한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체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의 수준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도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이 개원했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위사업 전체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소요부터 양산까지 교육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관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위사업 전문교육을 3단계로 구분하여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의 대상자를 방위사업청 직원뿐만 아니라 현역군인, 방산업체 직원들까지로 확대하고, 연간 교육과정 100여 개, 교육인원 약 9천 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표4 국방획득 교육기관 관련 주요 현황

구분	실태 및 현황
법령	없음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사업청(DAPA) 방위사업교육원: 100개 교육과정 • 국방대학교(KNDU) 직무교육원: 37개 교육과정 •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64개 교육과정 •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 방위산업교육센터: 17개 교육과정 • 한국생산성본부(KPC) 방위사업 전문과정: 4개 교육과정
경력관리	없음
보직제도	국방획득 전문분야 기준 모호
획득직위 선정	각 군 상이, 획득 관련 전문직위 지정과 관리 부실

국내 국방획득 관련 전문교육기관은 대표적으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교육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방위사업 전문과정 등이 있다. 국외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국방획득대학

(DAU) 이외에도 영국의 왕립 국방학교(DAUK, Defens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등을 들 수 있다.

국방획득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미국의 국방부는 의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인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법적으로 국방인력관리를 위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관리 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보직제도 및 획득직위 선정도 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 순환보직, 교육훈련 부족, 진급기회 미흡, 민간인력 미활용 등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개선을 시도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획득 업무의 합리화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방획득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관련 내용과 절차에 정통해야 한다. 따라서 군과 정부기관, 방산업체 종사자들까지 국방획득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국과 같이 법령을 기반으로 인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과 정부기관, 방산업체 종사자들까지 국방획득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관련 법령 제정이 시급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법·제도적 측면 하에서 가능할 것이므로 이른바 ‘한국형 DAWIA법’을 마련하도록 법·제도적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형 DAWIA법’을 제정하여 해당 기본법을 근거로 국방획득 인력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의 국방획득대학(DAU)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성도 있겠으며, 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을 확대하거나 민간대학 중 복수의 대학을 정부 지정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무기체계 발전은 무기체계를 획득·운용함에도 있어 체계의 복잡화, 정밀화, 기술화, 고도화를 고려함에 따라 국방획득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교육 관련 제도, 정책 및 실행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국방획득 양성교육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체계화, 전문화된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교육 필요성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국방교육 상황의 특수성에 맞춘 한국형 국방획득 교육체계의 기반을 만들어 국방획득 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에 기반한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현황과 특성, 그리고 환경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방획득 분야 인력양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민·군 간의 융·복합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법 제정 추진을 제안하는 바이다.

V. 나가며

최근까지 방산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방산비리의 전반적인 문제가 국방획득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적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자명해진다.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국방획득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체계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는 물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방획득 분야 전문교육에 대한 접근은 최근 방위사업 관련 발생하는 비리와 문제점의 근원적인 측면에 있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과 무지에서 비롯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겠다. 방산비리가 국방획득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리 개연성이 발생하고, 이는 전문교육기관 부재와 전문가 양성에도 소홀했던 결과로서 이어지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명기하고 있는데, 국방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함에 있어서 전문성에 기초한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법 조항에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위사업 종사자들에게 관련 전문성 부족과 무지에 의해 결국 비리사업으로 전락되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다양한 실제 사건, 사고 사례로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운영 5개년 국정과제로서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이 공표된 바 있는데,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무기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제도와 현장, 실행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해 방위사업 추진 간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국내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업무체계는 미국의 국방획득 업무체계를 이어받아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오면서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선진 국방획득 교육제도를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이 되겠다.

이를 위해서 ‘한국형 DAWIA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획득 관련 전문교육 기관을 확대 및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제도 및 국방획득 전문교육 관련 체계의 발전을 조속히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광운대학교, “국방분야 부패 발생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11.
-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http://www.add.re.kr>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http://www.kndu.ac.kr/jtc>
- 국방부, “국방사업관리 국가자격 신설 연구”, 2016.
- 국방부, “국방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발전”, 2012.
- 국방부,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방안 연구”, 2016.
- 김원대·김인국, “교육훈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2014.
- 김종열, “국방획득체계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62호, 2014.
- 김종탁, “미래 국방인력정책 추진 방향”,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2016.
- 김종하, “획득 전략 이론과 실제”, 2016.
- 김철환·고성수, “국방 획득전문인력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10권, 제1호, 2003.
- 노영희·홍현진, “교육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11.
- 류화·김형철, “미 국방 획득대학 DAU의 전문인력양성제도 소개”,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5, 2015.
- 방위사업청(DAPA), <http://www.dapa.go.kr>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용어사전”, 2013.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 설립 방안 연구”, 2014.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개론”, 2008.
- 방위사업청, “획득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제도 연구”, 2011.
- 석용석, “국방 민간인력의 효율적 운영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국방부, 2013.
- 이목상, “국방직무교육이 업무수행결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2008.
- 이상수, “맞춤형 방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행”, 국방과 기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5.
- 조영진, “국방인력 운영 개혁과제의 논리와 한계성에 관한 고찰”,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1.
- 최성빈, “국방 획득인력 전문화 대책”,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2004.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방위사업 전문교육기관 설립 방안 연구”, 2014.
- 한국생산성본부, <http://www.kpc.or.kr>
- Defence Academy Annual Report(2014/2015).
-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
-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